-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2025. 11.

대구광역시 달서구
http://www.dalseo.daegu.kr
[기후환경과]

-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설 명 자: 기후환경과장

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,

○ 2023년 수수료 인상 이후, 인건비 및 유류비 상승 등으로 분뇨수집·운반 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공공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원활한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분뇨수집·운반수수료를 인상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□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○ 안 별표에서 분뇨수집·운반수수료를 750ℓ까지 기본요금 18,900원에서 20,980원으로, 100ℓ마다 초과요금 1,640원에서 1,820원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분뇨수집·운반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.

□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

○ 2025. 9. 22일 분뇨수집·운반수수료 인상안에 대한 물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,

○ 본 조례안을 2025. 10. 13일부터 11. 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,

○ 2025. 11. 6일 조례·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□ **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**

○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.

□ **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**

○ 분뇨 수집·운반 수수료 인상에 따른 조정된 수수료를 조례에 명시하여 분뇨수집·운반업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,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□ **감사합니다.**

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00925129

제출년월일 : 2025. 11. 14.
제 출 자 : 달서구청장
(기후환경과장)

1. 제안이유

인건비 및 유류비 상승 등으로 분뇨수집·운반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공공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원활한 대행업무 수행을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분뇨수집·운반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분뇨수집·운반 수수료 조정(안 별표 수정)

- 기본(750ℓ까지): 18,900원 → **20,980원**
- 초과(100ℓ마다): 1,640원 → **1,820원**

3. 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 참조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(2025. 10. 13.~11. 3.)결과: 의견 없음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3) 비용추계서: 비해당
4)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: 원안 동의
5) 성별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6)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원안 가결

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분뇨수집·운반 및 처리 수수료(제7조 관련)

구 분	수수료	비 고
기본(750ℓ까지)	20,980원	- 「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에 따른 분뇨처리 수수료(10원/10ℓ)가 포함된 금액임 - 지하할증은 지하2층 이하 건물 중 대행업체에서 별도의 청소장비 (펌프 등) 설치를 필요로 하는 건물에 한함
초과(100ℓ마다)	1,820원	
지하할증	청소수수료의 7%	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[별표] 분뇨수집·운반 및 처리 수수료 분뇨수집·운반 및 처리 수수료(제7조 관련)	[별표] 분뇨수집·운반 및 처리 수수료 분뇨수집·운반 및 처리 수수료(제7조 관련)

구 분	수수료	비 고
기본(750ℓ까지)	18,900원	- 「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에 따른 분뇨처리 수수료(10원/10ℓ)가 포함된 금액임 - 지하할증은 지하2층 이하 건물 중 대행업체에서 별도의 청소장비 (펌프 등) 설치를 필요로 하는 건물에 한함
초과(100ℓ마다)	1,640원	
지하할증	청소수수료의 7%	

구 분	수수료	비 고
기본(750ℓ까지)	20,980원	- 「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에 따른 분뇨처리 수수료(10원/10ℓ)가 포함된 금액임 - 지하할증은 지하2층 이하 건물 중 대행업체에서 별도의 청소장비 (펌프 등) 설치를 필요로 하는 건물에 한함
초과(100ℓ마다)	1,820원	
지하할증	청소수수료의 7%	

【 관 계 법 령 】

□ 「하수도법」

제41조(분뇨처리 의무) ①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(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를 수집 ·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 · 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 · 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4. 5., 2012. 2. 1., 2013. 7. 16., 2020. 5. 26.>

② <생략>

③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 ·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 · 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(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)를 스스로 수집 ·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, 스스로 수집 · 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 · 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 · 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④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분뇨를 수집 · 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시 · 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 ·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 ·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 · 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,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 · 운반업자가 수집 · 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 · 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4. 5., 2013. 7. 16., 2020. 5. 26.>

⑤ <생략>